

전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87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87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2825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정, 남규석, 이수호

피고, 피항소인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변론 종결2020. 9. 16.

판결 선고2020. 11. 18.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282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9. 7. 8. 접수 제6069호로 마친 6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9. 7. 8. 접수 제6069호로 마친 2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마지막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2019. 7. 8.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 당시 첨부한 교회 정관(갑 제12호증)의 내용은 원고 교회 개정전 정관(갑 제15호증)의 내용과 동일하고, 위 표시변경등기는 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만을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